

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

지원대상자	확인(제출)서류	발급기관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	·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본인명의로 발급)	주민센터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	· 차상위계층 확인서	주민센터
③ 차차 상위계층 가구 구성원 *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0% 이하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또는 부/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· 신청인 가구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주민센터
④ 국가 유공자 가구 구성원	·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(본인명의로 발급)	지방보훈청
⑤ 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	· 장애인복지카드	주민센터
⑥ 여성가장 * 배우자가 없는(사별 또는 이혼)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 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* 동거 가족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장애인등록증, 진단서 등)	주민센터 해당기관
⑦ 다문화가족 자녀 *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· 기본증명서(한국 국적취득사실 기재)	주민센터

<참고> 차차상위계층 가구단위별 소득 인정액(기준 중위소득의 60%)

□ 환산표

(단위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2021년 기준 중위소득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	7,497,198
최저생계비(A)	731,132	1,235,232	1,593,580	1,950,516	2,302,949	2,651,441	2,998,879
소득인정액(A×1.5) = 기준 중위소득 60% = 차차상위계층	1,096,698	1,852,848	2,390,370	2,925,774	3,454,424	3,977,162	4,498,319
건강보험료 (A×1.5×0.0686)	75,233	127,105	163,979	200,708	236,973	272,833	308,584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마다 868,595원씩 증가(8인가구 : 8,365,793원)

※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0호

※ 건강보험료: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(시설·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% 이하)에 2021년 건강보험료율(6.86%)을 곱하여 산정